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10
----------	-----

제출연월일 : 2006년 4월 1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충청북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센터는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교육, 연구·조사,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안 제3조)
-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안 제4조)
-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운영함(안 제5조)
-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안 제6조)
-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함(안 제8조)
 - 다목적실 5~10만원, 기타시설은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 센터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안 제9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번지에 둔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단체 상호간 연계·교류 지원 및 도내 민간복지에 관한 협의·조정
2.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교육을 희망 하는 자에 대한 교육
5.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6.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
7. 충청북도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8. 사회복지법인 관련시설 또는 자활기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판매
9.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①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센터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수탁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자가 된다.

1.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자
2. 수탁자가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자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의 자
4. 입주기관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의 자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도의관련 공무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적
2. 센터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3. 센터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관리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운영·관리규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수탁자 의무) ①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징수등) ① 센터를 이용 하는 자에게는 별표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제1항 이용료의 100분의 50이하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 보조) 센터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의 취소) 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5. 기타 도지사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센터 이용료(안)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기 본	추 가	
다목적실	평일2시간 이 내	50,000원	• 기준시간 초과 이용 : 시간당 20%가산	냉·난방시 설이용시: 이용료의 20%가산
	토·일·공휴일 2시간 이내	100,000원		
기타시설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관 련 법 령 발 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1999.4.30>

③삭제<19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